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제1570호 1981. 7. 10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시내버스 터미널을 제외한다)
4. 교정시설
5. 영 부표 제4항(근린 생활시설) 중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공동주택(단, 2층 이하의 벽체만을 공유하는 연립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건폐율 등) (1)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주거전용 지역,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2)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영 제158조의 3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6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피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7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교육 및 연구시설(사설 강습소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8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전시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9조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10조 (건축심의) (1) 부산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를 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1)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청과, 어물시장 기타 시장으로서 옥외판매장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전채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임항지구 내의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묘지 관련시설
9. 동물 관련시설
10. 정육점, 세탁소(옥외에 세탁장과 건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장의사
11. 단독주택(공간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제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제 4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7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과 기숙사, 공동주택(벽체만을 공유하는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 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과 담장 및 10평방미터 미만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 종 및 제 2 종 미관지구 : 3미터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제 3 종 미관지구 : 2미터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3. 제 4 종 미관지구 : 3미터 (안락미관지구 내 제31호 광장과 대로 2류 8호선 및 대로 3류 31호선의 연변에 한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1)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의 구조상 또는 인접하는 기존 건축물·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앞면길이	건축물의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0	8
제 2 종 미관지구	8	6
제 3 종 미관지구	8	6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8	6

(2)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이하	50
4 - 10층	100
11 - 15층	300
15층이상	500

(3) 이 조례 제37조 내지 제42조 및 부칙 제 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높이, 색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1)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미관유지를 위한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미관유지를 위한 도로측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과 일체로 시설되어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8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1) 최저 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1. 전폐율 : 상업지역 $\frac{5}{10}$
기타지역 $\frac{3}{10}$
2. 용적율 : 상업지역 200퍼센트
기타지역 100퍼센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200평방미터

제19조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폐율 : 10분의 6
2. 용적율 : 800퍼센트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영제147조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운수시설(시내버스 터미널을 제외한다)
3. 고정시설
4. 영 부표 제 4항(근린생활시설) 중 제 7호 내지 제 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아이스크림 및 빙과 제조업과 식빵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의복 제조업, 방앗간,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탁구장, 예능교습소, 독서실을 제외 한다.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영제148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종교시설

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6.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7. 동물 관련시설

제22조 (특정업무지구 내의 용도제한) 영 제14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21조에 규정한 건축물과 기타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 장 임항지구 내의 건축 제한

제23조 (용도제한) 임항지구내에서는 영제 1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어항시설과 그 부속 건축물 및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 또는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2. 소방시설. 보안시설. 급유시설
3. 조선소, 선박 또는 기관수리 공장 및 선가대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4. 해사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합숙소, 급식소, 공중욕장)
5. 보세창고 및 임항창고(냉동창고, 싸이로 등을 포함한다)
6. 여객시설
7. 수산물, 신구 및 어구의 점포

제 8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4조 (건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종 공지지구 : 10분의 2
2. 제 2종 공지지구 : 10분의 3
3. 제 3종 공지지구 : 10분의 4

제2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공지지구 : 300평방미터
2. 제 2종 공지지구 : 200평방미터
3. 제 3종 공지지구 : 150평방미터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제 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각 부분까지의 거리 : 4 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각 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제 9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7조 (용도제한) 공항지구내에서는 영제1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4. 전파방해를 초래하는 전자공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28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29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축산업·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전시시설
6. 근린 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간이음식점·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8. 교육 및 연구시설과 의료시설(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11장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제한

제30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운동시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 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

제12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31조 (벽면의 위치) (1) 영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폭 8 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피어서 건축하되 그 부분의 유효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통행인의 통행에 공할 부분의 바닥은 건축선에 접하는 부분의 도로면 높이보다 0.15 내지 0.2미터 높게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마감이나 포장을 평탄하게 하여야하며 환기 또는 채광을 위한 시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담장의 구조)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와 구조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장 대지 내의 조경

제35조 (대지내의 조경) (1) 영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서 의 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평방미터당)	상록비율(%)
고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 60 낙엽수 : 4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 명하지 않고 키가낮은 나무)	0.4본 이상	

(2) 수종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1) 영제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 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 자 2 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2) 공사비의 예치시기·방법·환불·가격기준등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7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 2항의 규 정에 의한 법제 3장 내지 제 5장의 규정완화 및 대지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 소한도 기준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 지구 및 공치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180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 율 이하로 한다.

제39조 (용적율) (1)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 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 의 2배 이하로 한다.

(2)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 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 의 최대한도는 제 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공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대지면적}}$$

제40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 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 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

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168조의 2 또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2분의1 이상 으로 한다.

제42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 등은 제37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종전 규정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장 건축위원회

제43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제171조 제 4 항 내지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및 규칙에 서 정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4조 (조직) (1)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 장이 결정한다.

제47조 (소위원회) (1)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소 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하게 한다.

(3)소 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4)소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5)소 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전문위원) (1)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 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 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P. 92로 계속)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보조는 건축지도과에서 담당한다.

- 제4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협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48조 (회의록, 수당)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9조 (기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980. 7. 25)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2. 서울특별시 풍치지구 건축조례

3. 서울특별시 공치지구 건축조례
4.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례
6. 서울특별시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건축조례

③ [기허가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④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적법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잔임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7)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 받고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P. 75에서 계속 ·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부 칙

제5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 풍치지구 건축조례(조례 제1150호, 77. 6. 17) 부산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조례 제1152호, 77. 6. 17) 부산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규칙제442호 72. 5. 15) 부산시 건축대지식수 및 조경조례(조례 제1463호 80. 6. 11) 및 부산시 건축위원회 조례(조례 제793호 74. 7. 8)는 이를 폐지한다.
- (3)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기분할된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영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